

문서번호 : 10-0015

발신일자 : 2010. 1. 9

수 신 : 수신처 참조(4개사)

참 조 : 투자신탁팀

제 목 :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다음의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업무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투자신탁 : PCA 다이나믹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 제 A-1 호[주식혼합-파생형]
2. 해지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조, 동 시행령 제 223 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 7-9 조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 개월간 계속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
3. 투자신탁 해지일 : 2010년 2월 26일

- ※ 첨부: 1. 펀드 해지 일정 1부  
2. 고객서신 1부

<수신처>

대우증권, SC 제일은행,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PCA생명

PCA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 영 수

당신의 자산이 깨어납니다

고객님께,

경인년 새해 덕내 두루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PCA투자신탁운용(주)은 자산운용자이자 관리자로써의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객님께서 투자하신 펀드들에 대해 펀드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 당사는 고객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PCA 다이나믹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 제 A-1호[주식혼합-파생형]'가 펀드 규모에 따른 운용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CA투자신탁운용(주)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펀드 규모로는 효율적인 운용에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소규모 펀드의 장기화가 결국 수익자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동 펀드를 2010년 2월 26일자로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동 시행령 제 223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7-9조는 1개월 이상 펀드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펀드를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지가 결정된 펀드의 환매청구는 2010년 2월 16일부터 중지되며, 고객님께서 해당 펀드를 2010년 2월 12일까지 환매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별도의 환매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매될 예정입니다.

최근 100억원 이하의 소액펀드 해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도 최소 운용규모에 미달하는 소액펀드의 해지 및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객님께서 향후 기대수익과 기회손실을 생각 할 때, 안타깝지만 동 펀드를 환매하고 더 나은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자산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객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판매회사를 통해 이를 여러분께 제안드릴 계획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